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3호
모래내·서중양대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-146호(2001.10.29)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2010-38호(2010.2.1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67호(2010.10.28)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모래내·서중양대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13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

가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: 모래내·서중양대시장 정비구역

나.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: 변경없음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경	변경후	
기 정	모래내·서중양대 시장정비구역	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	12,247.0	-	12,247.0	

다. 사업정비사업의 시행자

1) 성명 : 모래내·서중양대시장 정비사업조합

2)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

라.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일 : 변경승인 고시일

마. 사업추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2) 용도지역·지구 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3)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4) 건축시설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대지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·층수 (지상/지하)	주용도	비고
기정	10,856	81,683	60이하	489.02이하	90m (27층)	공동주택,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업무시설	공동주택 360세대
변경	10,856	86,158	60이하	489.02이하	90m (29층)	공동주택,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	공동주택 454세대

바. 입점상인보호대책(변경)

1) 임차상인 재입점 지원 : 보증금 10% 할인 및 상가관리비 1년간 면제

2) 영업권 보상(휴업기간 인정) : 기정(3개월)→4개월

3) 이사비 지원 : 100만원

4) 상가분양(재입점) 또는 아파트 분양지원(우선권 부여 및 분양가 기준 3% 할인)

5) 조합 내 입점상인 보호팀 별도 설치

2.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

- 2001.10.29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최초 선정되고, 2010.2.11, 2010.10.28. 사업추진계획 변경 이후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계획(안)을 변경하고 입점상인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을 변경 함

3. 조건사항

- 사업시행자는 지역 상권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판매시설에 대한 상권활성화 계획을 제수립하여 사업시행(변경)인가 전까지 구청장과 협의할 것
- 입점상인보호대책 중 이사비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(100만원)으로 하되, 실질적인 이사비가 그 이상인 경우 실질 이사비를 지급할 것.
- 사업시행자는 입점상인보호대책 적용 대상에 대하여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변경된 입점상인보호대책 내용 안내 및 재입점 가능 여부 등을 사업시행(변경)인가 전까지 조사하고 구청장과 협의 할 것
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및 차폐감 등에 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할 것

4. 관계서류 열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2133-4646)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(☎330-163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
- 따로붙임된 시장정비구역 결정도와 관계 도면(지형도면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 기타

-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